

신영알이티 주식회사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사실 공고

신 청 인	신영알이티 주식회사								
신청일자	2019. 8. 23.								
신청내용	<p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인가를 신청</p> <p>○ 상호 : 신영알이티 주식회사</p> <p>○ 인가업무 단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인가업무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금융투자업의 종류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금융투자상품의 범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투자자의 유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-121-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탁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인가업무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	4-121-1	신탁업	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인가업무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						
4-121-1	신탁업	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						
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견제시 방법</p> <p>○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앞 (우편번호 : 03171)</p> <p>○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민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fsc.kr) → 인허가 → 신청사실공고 → “신청공고 의견수렴”에 의견 게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견제시 기간 : 2019.8.23. ~ 2019.9.6.</p>								

※ 공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☎2100-26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